

비상경제대책회의

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
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

2010. 7. 8.

관계부처 합동

||| 목 차 |||

I. 추진배경	1
II.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방향	3
III. 육성대책	4
1. 정책 금융 지원 강화	5
2. 농식품 산업특구 개발	7
3. R&D 투자 강화	8
4.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	10
5.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	13
IV. 향후 조치계획	14

I. 추진배경

◇ 농림수산물산업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미래 핵심 산업

- IT·BT·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
- 종자·제약·의료 등 전후방산업과 융합, 국가성장을 이끄는 생명산업

□ 농림수산물산업은 현재 국가 총 부가가치('08년, 920조원)의 10.3%, 총 취업자 수(2,358만 명)의 17.0%를 차지

○ 농어업은 다양한 전후방산업 성장과도 긴밀히 연계

* 전방산업 : 식품제조업·외식업 등, 후방산업 : 비료·농약 등 투입재 산업

○ 농수산물 가공업체는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으로, 취업유발효과가 높아 서민층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중요

* 산업별 취업유발계수('07) : 전 산업 14.6, 식품산업 29.7, 전기·전자 7.4, 수송장비 8.7

□ 식품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화하여 농어업 부가가치 제고

○ '08년 식품제조업 매출액(55.2조원)이 근래 들어 최대 성장세('00:2.2%→'05:0.3→'08:14.7)

○ 특히, 기능성식품, 편이가공식품(ready-to-eat) 등 고부가가치 상품 증가 추세

* 사례 : 상황버섯(항암효과)을 원료로 한 '상황식빵', '스스로 데워지는 통조림', 동결건조 상태에 냉수를 붓고 3분이 지나면 일반형태로 복원되는 '3분 김치'

○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해 농어업 성장을 도모(성장 유발효과* 27%)

* 식품산업 10조원 성장 시 농어업 2.7조원 성장('09.4, 농정연구센터)

□ 최근 농어업은 타 산업과 융합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

○ (동식물·미생물산업) 곤충·애견·관상용 동식물,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 동식물 자원의 산업화 확산 추세

* 사례 : 호랑풀잠자리·무당벌레·콜레마니 진디벌을 진딧물 방제에 활용

○ (제약·의료산업) 나노·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 생산 및 질병치료에 활용

* 사례 : 천연항생제 '코프리신'(쇠똥구리), 타미플루(중국 팔각나무), 식물향기치료 등

<누에고치 실크단백질 이용 “인공고막” 개발 사례>

* 기존제품보다 고막 재생율이 37% 높고, 재생기간이 단축됨.(2주→1주)

* 수입대체 및 신수요 창출효과 : 250억원/년 예상, 5개국 특허 출원 중



인공 고막



기존제품 적용



실크 시제품



실크시제품 적용

○ (신소재·에너지·생활산업)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, 미용제품 등 생필품 원료로서 중요성 증대

* 사례 :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플라스틱, 해조류 활용 에탄올, 한약재 활용 탈모예방 샴푸, 오디활용 염색약, 불가사리 콜라겐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

⇒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·공·상 융합형 선도기업 육성 필요

○ 농어업인·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서민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중점 추진

II.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방향

◇ 농림수산식품부,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의 정책수단을 연계

* (농식품부) 농어업 및 식품산업 육성, (중기청)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, (식약청) 식품안전·인증, (특허청) 특허심사 등

○ 일본도 '중소기업과 농림어업자 제휴촉진법'을 제정('08.7)하여 운영 중

*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각각 100억엔씩 예산을 확보하여 신상품 개발 지원, 판매·수출촉진, 기업입지 지원 등에 활용

□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·제조가공·기술 개발을 연계하여 산업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

① 공동출자형 :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

* 사례 : (주)국순당 고창명주(복분자 생산농가가 70%, (주)국순당이 30% 지분 투자)

② 전략적 제휴형 :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,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

* 사례 :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과 (주)샘표식품이 MOU를 체결하여 협력

③ 농어업인 경영형 :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·가공단계 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, 미용제품 등을 생산

* 사례 : 대니쉬 크라운(덴마크, 120년 전통의 유럽 제1위의 돈육가공 협동조합)

□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」 운영

○ R&D, 공장입지, 사업화 및 시장개척 지원 등의 육성정책 추진

○ 관련 부처의 정책·제도를 개선하고, 관련 법령도 정비

Ⅲ. 육성대책

비전

**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* 육성으로
국가 신성장동력 창출**

추진목표

- '12년까지 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육성
- 창업에 따른 직·간접 일자리 5,000여 개 창출

* 공동출자형, 전략적 제휴형, 농어업인 경영형

5
대
정
책
과
제



1. 정책 금융 지원 강화

- ◇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,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확대
- ◇ 농식품부는 융합기업 지원자금을 확충하고,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농식품분야 중소기업에도 차별없이 적용

가.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

- '12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「농식품 모태펀드」 조성
 - 민간의 융합기업 육성펀드(예 : 식품펀드, 농식품기술진흥펀드)에 출자
 - 펀드 운용 초기에는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높여 민간 자본유입을 촉진
- 민간 창업투자회사의 융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
 -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융합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
 - ※ 창업투자회사(조합)는 등록 후 3년 내에 납입자본금·펀드조성액의 40%이상을 창업기업에 의무 투자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)

나. 정책 금융제도 개편

-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정책보증제도 개편
 -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」에서 융합기업에 대한 보증한도와 부분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(현행한도 15억원, 보증비율 70%)

○ 「기술신용보증기금」에서도 융합기업을 우대대상에 포함하여 보증
한도 확대 등 추진(현재 운전자금 지원한도 2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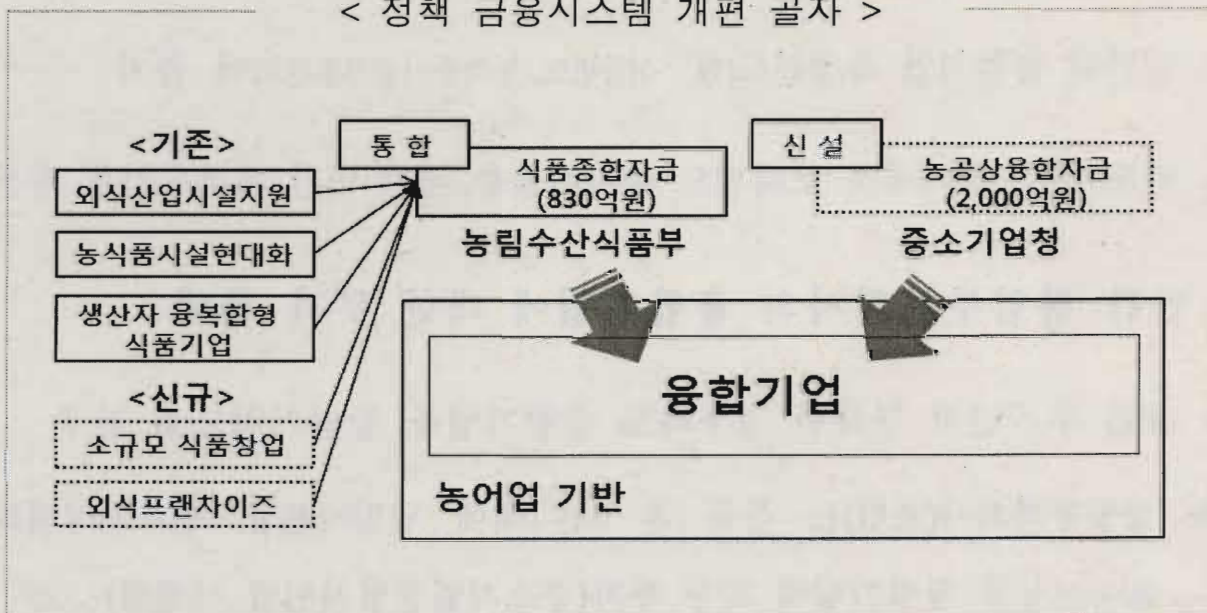
□ 융합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

○ (농식품부) 농식품 제조·가공 분야 융합기업을 중점지원('11년: 830억원)

- 기존 지원자금을 통합하여 「식품종합자금」 형태로 지원

○ (중기청) 융합기업의 원료구입, 시설 설치,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
위해 「농공상 융합자금」 지원('11년: 2,000억원)

< 정책 금융시스템 개편 골자 >



□ 농식품부·중기청 합동으로 '정책금융제도 개편 T/F' 구성·
운영('10.7~12월)

○ 융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·기술력 평가 등 세부 실행 방안 마련

2. 농식품 산업특구 개발

◇ 농어업과 관련 융합기업이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간척지 등에 농식품 산업 특구 개발

* (네덜란드 사례 : Agriport A7) 간척지 내 채소경작단지(4만ha)에 유리온실, 고부가 가공·포장·물류시설 집적

□ 농식품산업특구에는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·유통·물류·연구단지를 집적

○ 개발이 용이한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

○ 특구 내 주변 생산여건에 맞는 융합기업을 유치하여 거점 수출전략기지로 조성



○ 조성 중인 첨단유리온실, 대규모 농어업회사도 특구에 편입

- 첨단유리온실은 시범사업(10ha, 시화간척지)을 거쳐 100ha 규모로 조성
- 영산강(713ha), 새만금(700ha) 지역에 수출지향적 대규모 농어업회사 유치

□ 인프라조성, 자금지원, 조세특례,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지원

	농식품부	관계부처(기재부,지경부,국토부,중기청 등)
인프라	-경지정리, 미곡종합처리장, 농산물유통센터 등	-건축허가 및 제한에 대한 인·허가 및 특례 등
사업지원	-R&D, 모태펀드, 교육·경영컨설팅 지원	-시설·운전자금 지원,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
기타	-임대료 및 농지 전용 부담금 감면 등	-각종 부담금 감면, 조세특례 등

3. R&D 투자 강화

◇ R&D 투자 여력이 낮은 융합형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자금과 특허 출원, 기술거래, 컨설팅 등 종합 지원

* 고부가 식품기업에 대한 정부 R&D투자효과 : 28배의 민간 R&D투자 유도('09, 지경부)

가. 융합제품 개발 R&D 투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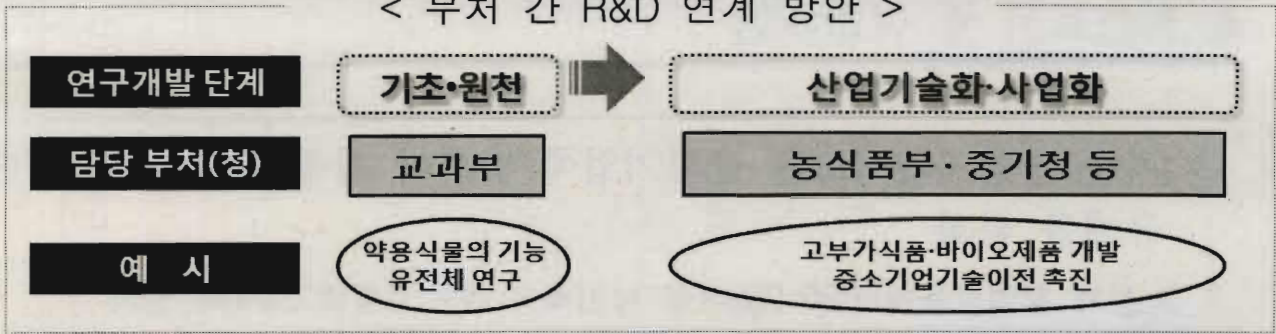
□ '12년까지 고부가 융합제품 400개 과제 개발 추진

- 금년 내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수요조사 실시('10.7~12)
 -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· 기술정보진흥원 · 대학 · 연구기관 · 업계 전문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과제를 사전 기획
- '12년까지 농식품부 · 중기청을 통해 연구개발비 1,000억원 지원 목표

구 분		'10.7~	'11	'12	계
고부가식품	신규과제 수(개)	12	15	23	50
	신규투자(억원)	17	32	51	100
바이오제품	신규과제 수(개)	20	150	180	350
	신규투자(억원)	20	400	480	900

- 연구분야별 · 프로젝트별로 대학 · 연구소 · 업계 등 산 · 학 · 연 전문가가 "R&D 컨소시엄"을 구성하여 통합 연구 시 우대
- 교과부 · 농식품부 · 중기청 등 관련부처 간 R&D 정책 연계강화
- '10.6월 교과부-농식품부 간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MOU 기체결
 - 기초 · 원천기술을 활용한 응용 · 산업화 기술이 중견 농어업인, 중소기업에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구축

< 부처 간 R&D 연계 방안 >



나. 개발제품의 신속한 지식재산권화 및 산업화 지원

□ 개발된 기술 및 관련제품의 특허등록 및 신뢰성 제고 지원

- 개발된 기술을 특허청 우선 심사대상(3개월, 녹색기술 1개월)에 포함하여 신속히 특허권을 획득하도록 지원(통상소요기간 18개월)
 - 국제특허 출원비용을 우선 지원(식품소재·바이오제품: 건당 700만원 이내)하고 해외인증 획득 지원대상 국가도 확대(8개국→10개국 이상)
- 융합제품 해외 수출 시에도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 검토

* 융합제품 결함에 의한 문제 발생 시 구매기업에 손해액 일부를 보전

□ 기술거래 활성화 및 전문 컨설팅 지원

- “농업기술실용화재단”을 농식품 분야 기술거래 및 기술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을 촉진
- 연구성과가 조기에 실용화 되도록 과제 기획단계부터 인·허가 담당 공무원(식약청 등), 전문가가 ‘융합제품 R&D 자문위원’으로 참여
- 특허청, 기술표준원, 보건산업진흥원, 민간전문가의 그룹 컨설팅 지원

4.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

- ◇ 기존 창업지원제도를 융합기업에 맞추어 확충하고, 식품 관련 규제를 완화

* 전체 창업보육센터(BI) 286개중 농업특화 BI는 8개로 2.8%에 불과

가. 창업 촉진

□ 농어업인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

- 농어업인의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시·군 농업 기술센터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용 「파일럿 플랜트」 확충 및 창업 교육 실시



<문경 농업기술센터 사례>

- * ('10년) 4개소 → ('11년) 8개소 → ('12년) 12개소
- 기업이 농어업인과 공동출자하는 형태의 융합기업 설립 지원
 - 시설 신·증축, 장비 구입 등 시설자금 및 원료비 등 운영자금 지원
 - * CJ제일제당은 전남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와 (주)신의도천일염(생산자 지분 48%) 설립('10.1)
- 지역특화품목을 산업화하기 위해 산·학·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단을 적극 활용
 - * 사업단 신규 육성 : ('11년) 10개소 → ('13년) 10 → ('15년~) 26

< 식품클러스터사업단 현황 >

- '10.7 현재 약 4만호의 농어가가 54개의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·판매
 - *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금액: ('05) 5,720억원 → ('09) 13,607 (228% 증)

□ **창업촉진센터를 확충하고, 기술·경영 컨설팅 강화**

- 대학·연구소에 융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센터 설치·지원
(12년, 17개소)
- 농·공대 교수 및 연구원의 공동관리 하에 융합기술 산업화, 창업
보육사업, 창업교육 등을 수행
- ISO22000(식품안전경영시스템), HACCP(위해요소관리제도) 인증획득지원

□ **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, 관련 규제를 완화**

- 융합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
공장 증설 또는 이전 시 인허가(36개 법률, 74개) 일괄처리 및 부담금 면제
- * (현행) 창업 7년 이내 → (개선) 융합기업은 창업 7년 이후도 포함
- 비농어업인의 농식품 분야 투자촉진을 위해 농어업회사법인의
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 폐지(현행 10%→ 0%)

□ **농어업인과 농식품 전공학생의 기업가정신 고취**

- 농업마이스터대학, 창업촉진센터를 통해 농어업인·귀농인 등을
대상으로 창업교육(70시간 이상) 실시
- 농식품 관련 대학에 교양 또는 전공필수로 창업강좌 개설을 지원

나. 규제완화

□ 소규모 농식품 제조·가공시설에 맞도록 폐수배출 시설기준 완화(10.12월)

- 폐수량이 적은(1일 최대폐수량 20m³이하) 소규모 식품 제조·가공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

* 금년 말까지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개정(환경부)

□ 기능성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(10.9월)

- 건강기능식품도 식품, 의약품과 같이 전면위탁생산 허용(10.9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)

* 전면 위탁생산(Toll Manufacturing) :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에 모든 공정의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제도

-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세분화 하여 기업 부담 완화(10.9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)

* '건강기능식품' 문자·도형 미표시: (현행)영업정지 15일→ (개선안)기간 단축

* 기능성분의 기준·규격 위반 시: (현행) 영업정지 15일·제품폐기→

(개선안) 함량 과·부족에 따라 차등 처벌

□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한식 등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포함 (금년말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)

* (예시) 국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을 80%이상 사용하거나,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

5.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

- ◇ 융합기업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, 농수산물유통공사, KOTRA 등 유관기관의 연계협력 강화

□ 융합기업의 성공적인 내수시장 정착을 뒷받침

- 농협 하나로마트(2,405개), 현대식 슈퍼마켓(나들가게, 1만개) 등에 융합 신제품 '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' 설치
- 농식품부·중기청이 공동으로 융합제품 전시·박람회 개최
 - * (농식품부)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, Korea Food Expo 등, (중기청) 대한민국 창업대전 등
- 정부·학교·군대 등 융합기업 생산식품의 공공기관 우선공급 추진
 - * 급식건빵 쌀 함유량 조정(13%→30%), 쌀떡케이크 제공, 공공기관 간식 우수제품 포함 등

□ 수출 촉진을 위해 기업 간 자율협력 및 수출 인프라 공동 활용

-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자율적 상호협력 촉진
 - 융합기업 시제품 수출 시 시장개척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 - * (사례) 일본 내 주류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(주)진로(진로JAPAN)와 경기도 포천 소재 "상신주가" 간 협약을 체결('10.1)하여 막걸리를 매월 10억원 수출
- 농수산물유통공사(aT) 해외지사(9개)와 KOTRA의 해외 비즈니스센터(99개), 해외공동물류센터(14개국 26개)를 연계 지원

IV. 향후 조치계획

- (합동지원팀 구성)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·중기청을 중심으로 “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” 구성
 - 농식품부·중기청 1급을 공동 단장으로 공무원,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시범사업 운영 및 점검,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
 - * 농림수산식품부-중소기업청 업무협약(MOU) 체결('10.7)

- (제도정비) 금년 중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의 융합기업 육성을 위해 5개 법령 제·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
 -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행

법령 제개정 사항

제·개정 법령	소관부처
1. 「농어업·중소기업 협력특별법(가칭)」 제정 검토 * 농·공·상 융합기업 정의, 공장설립 인·허가 절차 간소화, 융합기업 투자 촉진 근거 등	농식품부 중기청
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* 농어업 회사법인 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 폐지	농식품부
3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개정 * 전면위탁생산 허용, 안전과 무관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	복지부 (식약청)
4.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개정 * 창업지원 대상에 한식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체 포함	중기청
5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개정 *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폐수 배출시설 기준 완화	환경부

주요 사업 예산소요

사업명	소요예산(억원)				소관부처
	'10	'11	'12	계	
1. 정책 금융 지원 강화					
○ 식품종합자금	781	830	980	2,591	농식품부
○ 농공상 융합자금	-	2,000	2,000	4,000	중기청
○ 농식품 모태펀드	507	2,000	2,500	5,007	농식품부
2. R&D 투자 강화					
○ 고부가제품 연구개발	37	432	531	1,000	농식품부, 중기청
○ 융합제품 보증보험	-	-	100	100	농식품부, 중기청
3. 창업촉진					
○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	615	709	809	2,133	농식품부
○ 농식품 창업보육센터	7	12	14	33	농식품부
○ 융합창업촉진센터	10	35	65	110	중기청
4.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					
○ 해외시장개척지원	319	352	363	1,034	농식품부, 중기청
계	2,276	6,370	7,362	16,008	농식품부, 중기청

※ 농식품부, 중기청의 예산 추정치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변경될 수 있음

실행계획

실 천 과 제	일정	소관부처
1. 정책 금융 지원 강화 ① 「농식품 모태펀드」 조성 ② 창업투자회사의 융합기업 투자를 창업기업 투자로 인정 ③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내 융합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도입 ④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 시 융합기업을 우대 지원 ⑤ 「식품융합자금」 지원 확대 ⑥ 「농공상 융합자금」 신설	'10. 7 '11. 1 '11. 1 '11. 1 '11. 1 '11. 1	농식품부 농식품부, 중기청 농식품부, 금융위 금융위, 중기청 농식품부 중기청
2. 농식품 산업특구제도 도입	'10.하~	농식품부
3. R&D 투자 강화 ① 융합제품 400개 연구개발 지원 ② 관련 부처간 R&D 정책 연계 협약 추진 ③ 특허 우선 심사 및 해외 출원 비용 지원 ④ 융합제품에 대한 제조물보증보험 도입 검토 ⑤ 관련부처 공무원의 R&D 자문위원 위촉 ⑥ 개발제품의 국·내외 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	'10. 7 '10. 6 '10.10 '12. 1 '10. 8 '11. 6	농식품부, 중기청 교과부, 농식품부, 중기청 특허청 농식품부, 중기청 식약청 등 관계부처 중기청, 기표원
4.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 ① 「파일럿플랜트」 확대 ② 생산자 지분 참여형 융합기업 및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③ 「융합기업 창업촉진센터」 설치·지원 ④ 융합기업에 HACCP 인증 등 컨설팅 지원 ⑤ 융합기업을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포함 ⑥ 식품제조·외식업에 대한 규제 완화	'11. 1 '10. 8 '11. 1 '10. 8 '11. 1 '10.하	농진청 농식품부 농식품부, 중기청 농식품부, 중기청 농식품부, 중기청 식약청, 중기청
5.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테스트 코너 및 특별 판매장 설치 ② 융합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③ 해외 유통업체를 활용한 수출기회 확대	'11.하 '10.하 '10. 8	농식품부, 중기청 농식품부, 중기청 농식품부, 중기청
6. 제반 행정조치 ① 「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」 구성 ②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	'10. 8 10.하~	농식품부, 중기청 농식품부, 중기청 등